

언론조정 신청에서 보인 ‘피해’ 주장과 취재관행의 문제

김민남

부산 중재위원, 동아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홍보하고 또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4월 10일 부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민남 위원(부산 중재위원, 동아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이 『언론조정 신청에서 보인 ‘피해’ 주장과 취재관행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고, 부산 지역의 언론계,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인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종주 중재부장(부산지법 부장판사)의 사회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다음은 주제 발표문과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I. 들어가는 말

언론보도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 구제 방법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한국은 법원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손해배상 등의 조정과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을 갖추고 있다.

중재위원회라는 법정기관을 활용한 언론피해 구제제도는 반론권 제도가 일반화 된 서구 어느 나라에도 없는 한국 법체계의 독특한 제도로, 법원이 아닌 기관에 의해 분쟁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의 일종이라 할 것이다.

중재위원회의 조정제도 실효성 여부에 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중재위원회의 중재가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견해에서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인 언론피해구제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에 이

르기까지 편차가 크다(Lee, 1998).

이러한 논의들이 포괄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의 입법 배경이 되었다. 지난해 이 법의 몇몇 조항에 대한 일부 언론사들의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가처분 결정 조항을 제외하고는 합헌 결정을 내리는 등 약간의 파동은 있었지만 언론중재법은 비교적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 의한 피해구제를 둘러싸고 신청인인 ‘피해자’와 피신청인인 언론사 사이의 주장을 조정하는 조정심리사건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언론피해에 대한 일반 국민의 법의식이 상당 수준 향상되었거나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피해구제신청을 받은 언론사들이 반론, 정정보도 때로는 손해배상 등의 결정을 받는 경우 궁극적으로 언론사의 명예나 신뢰도를 훼손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제논문

고 취재 관행 등 제작 과정상 문제점 개선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부산 중재부의 경우, 2005년 조정신청건수가 35건이었던 것이 2006년엔 42건으로 늘었다. 이러한 구체적 사건의 조정심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양 당사자 사이의 법익이 상충되는 경우 비교재량하여 적절한 수준의 조화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III. 언론의 사회세력화와 공적 규제

1. 언론의 속성과 권력화

언론에 대해 공적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언론이 갖는 정보매체로서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언론은 그 특성상 사적 활동을 통해 공적 효과를 내는 이중성을 갖는다. 즉, 언론활동의 결과물은 정신적 산물인 동시에 경제적 상품이다. 언론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언론활동을 통해 나오는 정신적 산물 역시 상품으로 판매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언론이 생산한 정보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언론은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이윤을 얻기도 하지만 많은 공중이 적은 한계비용으로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다원화되고 분화된 현대사회에서 언론은 정부활동이나 여타의 공공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권리를 대행해주는 공중의 대리자로 역할하고 있다.

공적인 기능이 강조되는 속성을 지니는 언론은 현대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증대되어 점차 권력화되고 있다. 이것은 다양하고 수많은 매체에 의한

기사보도의 편재성(偏在性), 기사취재와 편집에서 나타나는 언론인들의 공명성(共鳴性), 중요기사 등을 비롯한 기사 보도의 반복성(反復性)이라는 또 다른 언론의 속성과 무관치 않다.

2. 공론장으로서의 언론

하버마스에 의하면 '공론장'이라는 용어는 18세기 독일에서 등장한 시민사회의 카테고리이다. 현대에 있어서도 공론장과 관련 있는 개념들, 즉 '여론', '공중', '공적 영역-사적 영역' 등은 사회를 설명함에 있어 중요한 열쇠고리적 언설(言說) 또는 담론으로 역할을 한다. 동시에 현대의 여러 제도, 법 등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질서의 기본이념을 이끄는 중요 개념이기도 하다.

하버마스는 현대사회의 대중매체는 상업적인 목적과 관련, 그 덩치는 커졌지만,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첫째, 매스미디어가 공적 영역의 능동적 토론의 주요 대상이었던 정치를 수동적인 '구경'의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대규모로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주요 공론장으로서 기능해야 할 대중매체가 상업성을 갖게 됨으로써 이해관계를 중재하는 장이 경합의 장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대중매체의 변질은 '난상토론을 통한 의사형성'이 '홍보', 'PR', '여론조사' 등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언론이 권력화 된 현대사회에서 언론은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론장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입장이다. 오늘의 우리 언론을 성찰적으로 들여다보는데 대단히 유용한 시각이라고 하겠다.

3.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등의 조화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동조 제4항에서는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위해 사회부조리를 적극 보도해야 할 언론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가 상충하는 경우 상호 조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법익임을 의미한다.

언론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진실성, 상당성 그리고 공익성을 입증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즉,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사생활 침해의 경우에는 공익성 존재 여부가 중요하다. 보도내용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이거나 공인에 관한 것일 경우 면책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인격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규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의 성격이 짙은 법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상충되는 법익의 조화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조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다.

Ⅲ. 언론에 의한 ‘피해’ 사례와 취재 관행

1. 언론에 의한 ‘피해’ 주장 사례

〈사례 1〉 인격권 침해 및 손해배상

카드 빚 등으로 생활고를 겪던 신청인이 빚을 독촉하는 친동생을 엽기적으로 살해했다고 보도했으나 대법원 판결 결과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신청인이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 A언론사는 피의자의 신청인을 직접 만나 진위여부를 확인하거나 신청인 가족 등에 대해 취재하지도 않은 채 기사를 게재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고 신청인은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피신청인 즉 언론사의 취재 및 제작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우선 이 사건이 지니는 엽기성과 함께 사회에 준 엄청난 충격에 비추어 이후 수사 및 재판과정의 추적 그리고 추후 보도에 소홀했다는 점이다.

둘째로 피신청인은 당시 담당 지방 주재기자가 휴가 중이어서 충분한 취재를 못했다고 하고 있다. 경찰수사 발표만을 그대로 믿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만나거나 가족 등 정황을 두루 살펴봐야 할 충분한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언론의 취재속성상 마감시간에 쫓기고 타매체와의 속도경쟁 등을 해야 하는 측면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의 취재, 제작과정에서 흔히 발견되는 잘못된 관행이 때로는 언론사에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는 다행히 중재부의 조정·조화 노력 등으로 쌍방 합의에 의한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으로 결말이 이어졌다.

〈사례 2〉 초상권 침해 및 손해배상

신청인이 2명의 고한에게 아파트 입구에서 납치되어

주제논문

성폭행 당했다고 보도하면서 CCTV 화면에 비친 신청인의 모습을 방영했다. 신청인은 CCTV 화면을 사전에 신청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보도하여 초상권이 침해되었고, 어떠한 화면 보호 처리도 없이 보도하여 신청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피신청인 즉 언론사의 취재 및 제작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우선 피신청인은 CCTV 화면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편집요원들의 견해도 동일하여 그대로 보도했다고 하고 있지만 어떠한 화면보호처리도 없이 보도함으로써, 신청인의 신변보호나 인격권보호 등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다.

둘째, 성폭력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보도 과정에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성폭행으로 고통을 받은 상태에서 보도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게 된다.

언론사의 취재속성이나, 기자들의 과도한 업무를 고려한다 할지라도 언론사의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는 것이다.

〈사례 3〉 명예훼손 및 반론보도

경찰관계자의 말을 인용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제조하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경주빵’은 가짜이며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신청인은 ‘경주빵’이라는 명칭은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어 그 명칭만으로는 타인의 상표권의 범위에 들지 않으므로 자신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이 사건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피신청인 C언론사의 제작과정상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언론사들은 K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보도를 전제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사실에 대한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피신청인은 K통신사 취재기자에게 사실 확인 후 보도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피의자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K통신사 취재기자의 말에 의존한 것은 잘못된 취재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점이다.

이 사건의 경우는 다행히 중재부의 조정 등으로 쌍방 합의에 의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결말이 이어졌다.

〈사례 4〉 명예훼손 및 손해 배상

신청인이 일본산 고등어를 수입·가공한 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명 흡소핑에 판매했다고 보도하자 신청인은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경찰발표만을 믿고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며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 받았음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우선 피신청인, 즉 D언론사가 경찰의 공식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공익을 위해 보도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도에서 신청인의 상표가 그대로 방송되어 익명성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점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피의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는 점은 언론이 지켜야 할 취재윤리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하겠다.

둘째로 피신청인은 일본산 고등어를 공급한 공

급업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확인을 위해 공급업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보도대상이었던 신청인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경찰수사 발표만을 그대로 믿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만나거나 정황을 두루 살펴봐야 할 충분한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이 사건의 경우는 중재부의 조정 등이 있었으나,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없어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2. 취재 관행

관행이란 언론인들이 일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형식화되고 일상적이며 반복되는 일과 행태를 의미한다. 그렇게 형성된 관행은 기자 개인이 일을 수행하는 도중에 그리고 일의 수행을 통해 즉각적인 주변 환경을 형성한다.

뉴스가치란 무엇인가에서부터 기사화 방식, 나아가 정보를 얻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제반 과정에 나름의 관행들을 발달시킨다.

이렇듯 일상화된 취재 관행은 내·외적 여건 등으로 쉽게 바뀌어 지지 않는다. 반츠와 그 동료(Bantz, et al.)들은 이러한 관행들이 고도화된 언론 조직일수록 융통성이 결여되어 최종 결과물에 대한 기자의 개인적인 참여와 통제를 어렵게 한다고 보았다.

취재 관행은 언론사의 물리적 제한점들을 극복하고 언론보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달한 것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의 요인이 되고 있다. 먼저, 사실 미확인 보도이다. 기자들은 사실 확인이 덜 필요한, 공신력 있는 취재원 특히 조직화된 취재원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시간적·공간적·재정

적 제약을 받는 기자들이 접근이 용이한 취재원을 선택하고 사실 확인이 덜 필요한 공신력 있는 조직화된 취재원을 선호한다(장호순·오수정, 2001). 언론에 의한 피해 주장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신력 있는 취재원인 경찰, 검찰이나 행정관서 등의 발표에 의존하여, 사실 확인 및 현장 접근을 소홀히 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한마디로 우리 언론은 비교적 취재원의 관변 의존적 성향이 여전히 크다고 하겠다.

둘째, 조직론의 관점에서 볼 때 신문사들의 취재 조직은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서로 간에 상호의존적이다. 특히, 뉴스대상을 평가할 수 있는 확고한 외적 기준이 없는 경우, 독자적인 취재보다는 패거리 보도를 선택하고 다른 경쟁기자들의 선택에 따르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의존 관행은 보도의 유사성과 획일성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IV. 결론 : 조정심리제도의 활성화와 언론 활동의 조화

언론은 정부활동이나 여타의 공공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권리를 대행해주는 공중의 대리자로 역할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사회의 감시자'로서, '사실을 전달하는 중개자'로서 그 기능이 부여되어 왔다. 이처럼 사적 존재양식의 언론에게 공적 임무가 강조되는 언론은 현대 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증대되어 핵심적 사회 세력화되고 있는 측면과도 무관치 않다. 자기 권력의 강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는 언론은 때로 인격권 등을 침해할

토 론

수 있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공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는 보호되어야 한다. 언론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명예훼손, 재산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로서 언론중재제도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형법과 민법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법원에 의한 재판에 호소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받도록 하는 방법은 피해자에게 많은 비용과 시간의 투입을 요구한다. 또한 언론사에게도 법적 불안정 기간을 장기화하는 등 자유로운 비판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면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 방법(ADR)의 하나인 중재위원회의 조정심리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심리제도는 사실 확인, 현장접근, 취재 대상의 의견이나 입장 확인 등의 절차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를 통해 언론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조정 신청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취재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언론의 취재시스템 개선으로 인격권 침해가 예방된다면 언론활동이 촉진되고 자유로운 비판기능이 확대됨으로써 언론자유를 신장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다.

지역 언론의 경영상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극히 부분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 의해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에 이를 정도이다. 심각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지역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공적 사명과 역할을 다하려고 안간힘을 다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하는 절박한 문제도 스스로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 □

토 론

사 회 고 종 주
부산지법 부장판사

윤한석(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활기차고 건강한 사회구현의 관건은 역시 언론보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요즘 언론은 미담기사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사건, 사고 기사처럼 흥미를

유발하는 기사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대한 보도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한다. 또한 언론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게재하는데 지나치게 인색한 경향이 있다. 잘못 보도한 것에 대

해서는 그에 상응한 보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박정진(부산광역시 여성연대회의 대표) : 언론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언론은 사실보도에 충실해야지 허위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과거 부산시에 재직할 당시 본인 확인 없이 일방적인 기사가 보도되어 곤욕을 치른 적 있다. 당사자에게 확인만 했더라면 오해 없이 잘 해결될 일이었는데 언론이 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방향으로 기사화했고 이 과정에서 언론사와 감정적 대립까지 갔다. 당시 오보도 오보지만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보도 이후 언론의 태도였다. 잘못된 취재관행은 또 다른 부가적인 피해를 양산해낸다. 사실 확인에 미흡하고도 그 결과에 책임지려하지 않으려는 취재 관행은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희길(부산MBC 사회부장) : 토론회 주제 논문에 예시된 4건의 조정신청사례는 공교롭게도 모두 사건 기사에 해당한다. 예시된 4건 모두 수사기관과 얽혀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조정신청 사례는 저희 방송국에서 보도한 것이므로 그에 한정해서 언급하겠다. 우선 이 사건의 취재원인 수사기관의 수사가 허술한 측면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이 건은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 즉 공익적 가치가 큰 보도라는 점에서 접근한 기사였다. '공익보도'라는 측면에서 접근했기에 익명을 보장하는 것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 신청인은 우리의 보도

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기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사권이 없는 기자들로서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것은 취재관행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자들이 기사화하는데 많은 취재노력을 한다는 사실도 알아주었으면 한다.

박상현(국제신문 편집부국장) :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인데 특히 시민단체의 언론에 대한 시각이 확연히 다름을 오늘 절감했다. 사건 기사의 경우 언론이 진실, 사실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과 상당성을 바탕으로 기사를 쓰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그럴 때는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요즘 취재환경은 정말 열악하다. 심지어 정부도 언론에 조직적으로 맞서야 한다고 나서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자노릇 못해먹겠다는 푸념도 나오지만 많은 기자들이 더욱 정확하고 신중하게 기사를 쓰려 노력하고 있다. 사건보도 시 피해자 인권보호 등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이재희(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 언론이 선정적인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아동 성폭력, 가정폭력, 연예인의 폭력 사건과 관련된 보도에서 피해자의 인격권이 심하게 침해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특히 연예인 폭력사건과 관련해 언론사에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하지만 대부분 언론은 이를 거절한 채 보도하고 있다.

토 론

또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편에서 보도하는 경우도 있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하여 노출을 꺼려한다. 그러나 가해자 측은 적극적으로 언론보도를 문제 삼아 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자신들의 무죄를 항변하고 언론은 이를 가감 없이 수용하기도 한다.

취재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최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지면서 기자 개개인이 저야 하는 부담이 매우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앞에서 언급했던 폭력사건의 황당한 합의를 양산하는 주범이 아닌가 생각한다. 언론사들이 기자 개개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도 오보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찬승(전국모범운전자 부산지부장) : 우리 단체는 시민이 인터넷에 올린 허위의 내용을 언론사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기사화하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 무보수 봉사단체로 활동 중인데 치명적으로 명예를 손상당한 경우였다. 언론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보도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동우(한국언론재단 부산사무소 위원) : 최근 명예훼손 관련 소송이나 조정 신청이 증가하면서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지면서 언론보도가 많이 위축되었다는 말을 기자들로부터 자주 듣는다. 그만큼 취재환경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이 공익을 앞세워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사익

을 최대한 보호하되 이 두 이익 간에 대립이 있는 경우 언론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역 언론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만 언론환경은 수용자가 만들어가므로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이 좀 더 지역 언론에 애정과 관심을 가질 때 지역 언론의 위기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혜경(부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최근 한 학생이 동급생들에게 잔인하게 구타당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언론은 '잔혹한 우정'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아 사회기사로 게재했다. 우정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도 가혹하게 목숨을 잃은 경우였는데 언론은 이를 미화하는 듯 선정적으로 보도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가족은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받아야 했다. 당시 피해자 가족은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려 했지만 경찰, 검찰 조사 등 각종 조사 때문에 언론보도에는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신청하려 했으나 기간도과로 각하된다는 얘기를 듣고 청구를 포기했다.

사건기사 대부분이 이처럼 사건의 피해자 또는 가족에게 제2, 제3의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아무렇지도 않게 기사를 게재하는 경향이 있다. 기자는 이런 사건 기사를 쓸 때 피해자와 남은 가족 입장을 배려하여 기사화하였으면 한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신청기간을 더욱 연장해야 한다고 본다. □